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대한 관리 강화	3
2.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13
※ 참고자료	17
1. 환경표지 인증제도	17
2.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18
3. 인증 표시의 무단 사용 관련한 벌칙 규정 입법례	19
4. 행정처분의 기준	20
5.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요	2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4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34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산업표준화법」 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다.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안 제23조).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속임수·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은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환경표지등과 유사한 표시를 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②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과 인증 연장 및 인증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표지등과 관련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현행	개정안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 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 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u>이 인정되는 경우</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연 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 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 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 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 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 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3호 및 제 4호-----.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4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u> 2. <u>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u>
<u>제34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략) 5. <u>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u> 6. <u>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u>	<u>제35조(벌칙)</u>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35조(벌칙)</u> (생략) <u>제36조(양벌규정)</u>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34조</u>	<u><삭 제></u> <u>제36조(벌칙)</u> (현행 제35조와 같음) <u>제37조(양벌규정)</u> ① ----- ----- ----- <u>제35</u>

현행	개정안
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조나 제36조----- ----- ----- -----. ----- ----- ----- -----. ② ----- ----- -----제35조나 제36조----- ----- ----- -----. ----- ----- -----. 제38조(과태료) ① ~ ③ (현행 제37조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표지란 해당 제품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환경성

적표지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¹⁾.

현행법은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함)의 인증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²⁾,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환경표지등의 부정 사용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위임 및 위탁) 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환경표지인증 취소 현황]

(단위 : 개, 제품)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31	153	172	187	182
사후관리 거부	-	-	9	11	1
생산중단	51	13	13	6	-
인증기준 부적합	80	140	150	170	181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네이버, 옥션 등)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등 인증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³⁾하고, ③ 환경표지등의 무단 사용⁴⁾에 대한 현행 벌칙을 강화(2년, 2천만원 이하 → 3년, 3천만원 이하) 하려는 것으로,

3) 신설되는 인증 관련 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인증 유효기간	3년 ※ 업무규정에서 규정함	3년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인증 연장 요건	유효기간 종료 시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 ※ 명문의 규정은 없음	①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인증기준이 동일하고, ② 기존 인증제품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신청된 인증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연장 가능
인증 취소 요건	환경규제기준 미준수 ※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기준 부적합 사유에 해당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인증 재신청 제한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1년 이내에 인증 재신청 불가	① 비교적 중대한 사유(속임수 등)로 그 인증이 취소된 자 : 3년 ② 비교한 경미한 사유(인증제품 미유통)로 그 인증이 취소된 제품 : 1년

4)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등

환경표지등의 인증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22조제3항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여부 확인의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표시·광고를 직접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여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반 내용의 공개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해당 사실의 공개를 통하여 사업자 등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사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횡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셋째, 개정안 제22조의2제3항은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인증기준이 동일함을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① 환경표지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이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인증⁶⁾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요건에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넷째, 개정안 제23조제1항제2호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 관련 법령 및 위반행위의 종류, 범위 등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16조의3에서는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고 있음⁷⁾.

다섯째, 개정안 제23조제5항은 인증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환경표지 인증 재신청 대상 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정안은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u> <u>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⁸⁾.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인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비교적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대신하려는 것이므로,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환경오염 예방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541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환경표지 인증제도

□ 제도 개요

- (목적)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서비스 포함)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수준 및 자원·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 (시행기간/주체) '92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기관)

□ 추진 경과

-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환경표지제도 도입('92.4)
- 환경표지제도 근거법령 제정('94.2, 現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가입(現 60개 지역·국가 37개 제도, '97.9.)

□ 인증 현황('24.5월 기준)

- 158개 대상제품군의 인증기준 운영, 19,059개 제품에 인증부여

분야	제품군	분야	제품군
1.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21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11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36	6. 산업용 제품, 장비	17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27	7. 복합용도 및 기타	25
4. 가정용 기기·가구	15	8. 서비스	6

- (인증기간) 3년(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해 연장 가능)
- (인증기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 환경성 및 품질, 경제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 선정 및 기준 설정, 동일 용도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을 갖는 기준
- (인증사유) 세부 환경성 기준을 바탕으로 7대 인증사유* 범주 운영

* 1) 자원순환성 향상, 2) 에너지 절약, 3) 지구환경오염 감소, 4) 지역환경오염 감소, 5) 유해물질 감소, 6) 생활환경오염 감소, 7) 소음·진동 감소

2.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 제도 개요

-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 기여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시행기간/주체)** '01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기관 지정, '07년)
- **(인증기간)** 3년
- **(인증기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제조→수송→사용→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장효율 개선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인증 현황

- 환경성적표지 유효인증제품은 총 473개 기업, 2,429개 제품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5월
환경성적표지	1,115	1,161	1,375	1,463	1,442
저탄소제품	177	294	492	872	987
기업수	266	323	396	457	473

3. 인증 표시의 무단 사용 관련한 벌칙 규정 입법례

구분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 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 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4. 행정처분의 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5조제5항제1호·제2호, 법 제16조의6제1호·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 이상	법 제15조제5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법 제15조제5항제5호	등록취소 경고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사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사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도급받은 방지사설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8호	등록취소			
10)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9호	등록취소			

5.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요

□ 개요

- **(정의)** 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비, 기계, 부품 및 기구 등 방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설계·시공하는 공사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6조·제28조

□ 등록 및 관리

- **(등록대상)** 환경전문공사(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
- **(등록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등록요건)** 기술인력(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실험기기(수질 분야) **보유 필요**
 - **(기술인력)** 기술사·기사 포함 4명 이상(대기, 수질 분야), 기술사·기사 포함 3명 이상(소음·진동 분야)
 - **(실험기기)** BOD, COD, SS 등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실험기기(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시 인정)
- **(관리)** 시·도지사가 등록요건, 등록증 대여 여부 등 지도·점검(1회이상/년)→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등을 환경부 보고(매년 2월)
 - **(등록취소)** 등록한 후 2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당·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 등록 및 위반현황

- **(등록현황)**

(단위 : 개소, '23.12월기준)

계*(중복제외)	대기	수질	소음·진동
1,262	675	780	66

* 한 업체가 여러분야에 등록, 등록업체수 합과 환경분야별 업체수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위반조치현황)**

(단위 : 건, '20~'23년)

계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122	95	7	4*	29**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등록(1건), 2년이상 영업실적 없음(2건), 수질분야 실험기기 없음(1건)

** 행정처분(경고 또는 영업정지)과 고발 처분을 함께 조치한 경우 각각 반영하여 작성